



+ 사이버폭력, 이것이 궁금해요!



친구가 단톡방에서 제 흐를 했어요. 이것도 사이버폭력에 해당되나요?

A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사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페어크 영상 제작과 관련된 법률도 있나요?

A 네, 물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만 제게 기프티콘을 강요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이버폭력에 해당되나요?

A 네, 당연합니다. 기프티콘 강요, 게임머니 강요, 게임아이템 갈취, 와이파이 셔틀 모두 사이버 갈취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갈취의 경우 사안에 따라 공갈죄,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갈취를 당했다면 꼭 화면 캡처를 통해 증거를 남겨 놓으세요!



+ 사이버폭력, 이렇게 신고하세요.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 24시간 상담 및 신고 가능



국번없이 117 (요금무료)

#0117 (요금무료)

www.safe182.go.kr

※ 24시간 상주하는 상담원이 1:1상담방식으로 직접 관리하며 사건 종결 시까지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성·학교폭력피해자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되어 있어 피해자를 위한 상담·수사·의료·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Search 사이버폭력,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이버폭력,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자원센터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 www.safe182.go.kr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신고·상담서비스 제공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경찰청)

- ecrm.cyber.go.kr
-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제보 서비스 제공

사이버폭력,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희망이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스마트 Step 센터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Center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 www.wee.go.kr
- 온라인 고민상담 서비스 제공(개시판형, 비밀 익명상담)
- Wee클래스 및 Wee센터 안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기본원)

- www.cyber1388.kr
- 온라인 고민상담 서비스 제공(1:1 채팅상담, 개시판형 비밀 상담 등)
- 웹심리검사 제공(청소년 및 부모 대상)

스마트쉼센터 (과학기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www.iapc.or.kr
-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상담 제공(개시판, 내방상담 등)

사이버폭력,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Teacher-Content, Learning, Evaluation and Activity Resources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서비스 / 도란도란 학교폭력 종합정보서비스

- cyberethic.edunet.net / dorandoran.go.kr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자료 제공

푸른나무재단

- btf.or.kr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온라인 상담 제공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www.아인세.kr
-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운영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소년상담1388

모바일 앱



상담미찌



푸른코끼리



스마트안심드림

- 청소년 고민 상담 서비스 제공
- 365일 24시간 1:1 상담

- 학교폭력 고민 상담 서비스 제공
- 월~금 오전 10시~밤 11시50분 운영

- 고민상담서비스 (1:1 채팅, 개시판 등)
- 사이버폭력 피해자 체험
-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제공

나와 친구를 위해
**함께 실천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가이드

[2021년 개정판]

건강한 사이버 세상,
우리 함께 지켜요!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정보통신망상에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치되거나,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 대표적 유형을 알아봅시다.



사이버 언어폭력

채팅방, 게시판 등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 사진, 동영상 등으로 비방글, 악성댓글, 욕설 등을 올리는 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사이버 갈취

사이버머니, 금품갈취형으로 주로 와이파이 셋틀, 게임머니 등 사이버상의 갈취 형태의 괴롭힘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모든 행위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상대를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채팅방에서 퇴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모든 행위(폐카, 카감, 멤블, 방폭 등)



사이버 영상 유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나 각종 유해성 사진, 영상 등을 전송·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

※ 이 외에도 사이버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이렇게 예방합시다.+

01 누구라도 사이버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02 사이버상에서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활동합니다.

익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을 숨기며 다른 사람인 척 활동하지 않고, 타인의 정보를 허락 없이 유포하지 않습니다.

03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사이버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빠르게 유포되고 악용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04 올바른 사이버 언어습관과 사이버 예절을 익힙니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상했다면 바로 사과합니다.

05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동의를 구합니다.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사이버상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관련된 사람들에게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하지 않은 자료는 사이버상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06 확신할 수 없는 정보나 음란물 등은 함부로 게시·유포하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 또는 사실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사람과 유포한 사람은 모두 처벌받습니다.

07 모르는 상대의 쪽지 또는 대화 신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가급적 피하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쪽지를 보내거나 대화 신청을 하는 경우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08 낯선 이와의 오프라인 만남은 피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관계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오프라인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주위 어른들에게 알립니다.

09 사이버폭력을 목격하면 방관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친구가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방관하지 않고 주변 어른이나 선생님께 알리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합니다.



사이버폭력, 이렇게 대처합시다.+

사이버폭력 대처하기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모님 또는 선생님과 먼저 문제를 상담하고 전문기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고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거절해야 하나요?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세요."

온라인상에서는 더욱 명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나 강요를 하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욕설을 하는 친구에게 저도 똑같이 말해주고 싶어요!

"보복은 금물!"

사이버상에서 욕설을 주고받는 등 다툼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힌 후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를 남기고 대화방을 나갑니다.



사이버폭력으로 피해 입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증거를 꼭 저장하세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화면 캡처,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파일명에 일시와 장소를 적어둡니다.



주위에 피해를 입은 친구를 목격했는데,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해주세요"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으로 소외되거나 피해를 당하는 학생의 심정을 헤아려보고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합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행동입니다.

